

정관

재단법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

재단법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장학·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발전기금재단(이하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”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학술 연구 활동의 지원 사업
2. 장학사업
3. 국내·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사업
4.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사업
5. 교육·연구 시설의 확충사업(학생생활관 주거 환경시설 개선 등 포함)
6. 교직원, 학생의 교육 훈련 및 연수 지원 사업
7. 지역사회 및 국제 봉사활동을 위한 사업
8. 기타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
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및 관련인사에 한한다.

제 2 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

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4.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
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
제7조(재산의 관리)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8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.

1. 기본재산의 과실 및 사업수입

2.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보조금, 출연금

3.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, 기부금

4. 독지가의 기부금

5. 기타 수입

제10조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11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2조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,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

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 이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법인의 설립자

2. 이 법인의 임원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

4.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
5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사 11인

2. 감사 2인

3. 사제

② 전항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, 수석상임이사 1인,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다.

제17조(수석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수석상임이사를 둔다.

② 수석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8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, 교학부총장, 기획부처장, 학생부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, 기획부처장은 수석상임이사가 된다.

③ 그 외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21조(이사장, 수석상임이사,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. 다만, 수석상임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.

③ 수석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 법인의 평상의 업무를 처리한다.

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대외적인 재단업무를 수행한다.
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상임이사, 상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23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
6.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. 날인하는 일

제 4 장 이 사 회

제24조(이사회와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5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이사회와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

의장이 결정한다.

제26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, 수석상임이사,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7조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.

제28조(이사회와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별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와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와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서면결의와 금지) 이사회와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단, 이사회와 의결을 요하는 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-1조(사무국) ①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협력과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단, 상근직원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③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 등 근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31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2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된다.

제34조(활용실적의 공개) 국립강릉원주대학교발전기금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.

제35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6조(광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.

-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- 2.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

제37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3과 같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87. 9. 15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92. 3. 17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94. 5. 3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96. 6. 29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97. 5. 23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98. 3. 12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1999. 3. 26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2001. 10. 13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2005. 2. 2)로부터 施行한다.

- 附 則 -

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는 날(2005. 5. 10)로부터 施行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07. 10. 10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08. 2. 10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09. 3. 16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09. 9. 21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0. 3. 9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0. 12. 15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1. 2. 11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1. 9. 15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1. 11. 7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2. 2. 16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2. 3. 5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2. 12. 4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3. 2. 12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3. 4. 29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3. 9. 17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4. 11. 25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5. 11. 5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16. 3. 18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20. 11. 10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22. 3. 31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23. 4. 20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24. 4. 8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24. 11. 26)로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(2025. 4. 9)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)

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

1. 기본재산총괄표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	비 고
현 금		52,878,290원	수익증권저축 (장기면세 공사채)

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	비 고
현 금	대한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	52,878,290원	장기면세 공사채

(별지 2)

현재의 기본재산 목록

1. 기본재산 총괄표

재 산 명	수 량	평 가 액	비 고
현 금	4	2,600,000,000원	
계	4	2,600,000,000원	

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
재 산 명	수량 또는 물권의 표시	평 가 액	비 고
현 금	정기예금	180,000,000원	
"	정기예금	260,000,000원	
"	정기예금	1,040,000,000원	
"	정기예금	1,120,000,000원	
계		2,600,000,000원	

(별지 3)

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

직 위	성 명	주 소	임 기	비 고
이사장	최지훈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 [㉠] B-205	당연직재임기간	강릉대학장
상임이사	윤경호	강원 강릉 포남동 46블럭 1-1롯데	"	강릉대학교무과장
이사	허 천	강원 강릉 초당동 326-1	"	강릉대학생과장
"	김명래	강원 강릉 임당동 90-2	4년	강릉상공회의소장
"	김옥상	강원 강릉 옥천동 146-1	"	강릉시의사회회장
"	최돈웅	강원 강릉 남문동 175-9	"	경월주조사장
"	최창복	강원 강릉 금학동 20-5	"	강릉대기성회장
"	황경상	강원 강릉 남문동 19-2	"	강릉대전기성회장
"	강석환	강원 강릉 남문동 19-2	2년	강릉신문화원장
"	김영수	강원 강릉 홍제동 17-4	"	강릉시교육장
"	이철호	강원 강릉 교1동 939-10	"	강릉문화방송사장
"	최돈택	강원 강릉 교1동 758-3	"	동해상사사장
"	최찬규	강원 강릉 옥천동 89-2	"	경월주조사장
감사	곽영기	강원 강릉 포남동 116블럭 4-5롯데	당연직재임기간	강릉대서무과장
"	이계찬	강원 강릉 성남동 97-9	2년	강원계기사장

공익법인 임원 현황

법인명	임원현황			비고
	직명	성명	임기	
재단법인 국립강릉원주대 학교발전기금재단	이사장	박덕영	2024.11.26.~2026.4.30.	당연직 (총장)
	수석상임이사	김도완	2024. 4. 9. ~ 2026. 2. 14.	당연직 (기획부처장)
	상임이사	전승호	2023. 11. 5. ~ 2027. 11. 4.	
	이사	이선우	2024. 02. 15. ~ 2026. 2. 14.	당연직 (교학부총장)
	이사	최종호	2024. 4. 9. ~ 2026. 2. 14.	당연직 (학생부처장)
	이사	김도현	2023. 11. 5. ~ 2027. 11. 4.	
	이사	이병화	2024. 11. 26. ~ 2027. 11. 4.	
	이사	송장호	2023. 11. 5. ~ 2027. 11. 4.	
	이사	김순하	2021. 11. 17. ~ 2025. 11. 16.	
	이사	김상락	2024. 4. 9. ~ 2028. 3. 4.	
	이사	이기훈	2023. 11. 5. ~ 2027. 11. 4.	
	감사	이창호	2023. 11. 17. ~ 2025. 11. 16.	
	감사	김형익	2024. 4. 9. ~ 2026. 3. 4.	
계		13명		